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77 호

2006년 2월 17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55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3

훈 령

- 인천광역시남동구훈령 제224호(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규정일부개정규정) 9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58호(용역(전자)입찰공고(2006년불법주정차단속민간용역사업) .. 1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59호(방치차량강제처리공시송달공고) 1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61호(시설공사입찰공고(미래광장과1개소조경시설관리공사))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64호(시설공사입찰공고(녹지및가로수권역별관리공사(구월간석권역)) 2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65호(시설공사입찰공고(녹지및가로수권역별관리공사(만수권역)) 3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66호(시설공사입찰공고(2006년도가로등보수공사(연간단가))) 3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67호(시설공사입찰공고(2006년도가로등정비사업(연간단가))) 3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68호(시설공사입찰공고(2006년도무단투기방치폐기물수거,운반,처리용역(연간단가))) 4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69호(방치차량강제처리공시송달공고) 4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70호(운행차정밀검사과태료부과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5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177호(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55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6호(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109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7호(공공하수도비관리청공사시행허가고시) 111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 655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006.2.17 개정)

【기관별·직급별 정원(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현행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동
총계	747	474	19	40	16	198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650	418	11	36	15	170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5	3	1	1		
행정	2	1	1			
시설	1	1				
행정·임업	1	1				
보건·의무	1			1		
5급 소계	41	16	2	5	1	17
행정	23	10	2		1	10
의무	4			4		
토목	1	1				
건축	1	1				
행정·전산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토목	1	1				
행정·지적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토목·임업	2	1				1
행정·화공·기계·환경	1					1
행정·임업·토목·지적	1					1
6급 소계	118	90	3	5	3	17
행정	74	53	3		1	17
세무	2	2				
사회복지	1	1				
전산	1	1				
임업	1	1				
보건	1	1				
토목	3	3				
건축	3	3				
지적	2	2				
통신	1	1				

직급별 기관별	현 행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동
행정·세무	5	5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기계	1				1	
행정·화공	1	1				
행정·농업	1	1				
행정·임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2	2				
행정·토목	1	1				
행정·지적	1	1				
임업·토목	1	1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간호	1			1		
토목·건축	3	3				
행정·전기·건축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화공	1	1				
행정·토목·건축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7급 소계	189	134	5	7	4	39
행정	104	62	5		2	35
세무	13	13				
사회복지	9	5				4
전산	2	2				
기계	2	2				
전기	3	3				
화공	1	1				
농업	1	1				
임업	3	3				
수산	1	1				
보건	4	3		1		
의료기술	1			1		
간호	4			4		
환경	5	5				
토목	16	15			1	
건축	11	10			1	
지적	5	5				
화공·환경	1	1				
축산·수의	1	1				

기관별 직급별	현행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동
보건·약무	1			1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1	1				
8급 소계	202	129		10	6	57
행정	95	59		1	2	33
세무	23	23				
사회복지	33	9				24
전산	6	6				
기계	1				1	
전기	1	1				
화공	2	2				
농업	1	1				
임업	3	2			1	
축산	1	1				
수산	1	1				
보건	8	4		4		
의료기술	2			2		
간호	3			3		
환경	4	3			1	
토목	8	8				
건축	4	3			1	
지적	3	3				
전기·기계	1	1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	1	1				
보건·환경	1	1				
9급 소계	94	45		8	1	40
행정	53	22			1	30
세무	5	5				
사회복지	11	1				10
전산	1	1				
전기	1	1				
임업	2	2				
보건	3			3		
의료기술	4			4		
식품위생	1			1		
환경	1	1				
토목	5	5				
건축	4	4				
지적	1	1				
보건·환경	2	2				

기관별 직급별	현행					
	총계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출장소	동
별정직 계	1	1				
기능직 계	95	54	8	4	1	28
6급 소계	3	3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1	1				
7급 소계	5	4				1
기계	1	1				
운전	3	3				
조무(조무)	1					1
8급 소계	12	10	2			
전기	1	1				
기계	3	2	1			
운전	3	3				
사무보조(필기)	1		1			
조무(조무)	4	4				
9급 소계	26	16	5	2		3
건축	1	1				
교환	1	1				
운전	9	4	1	1		3
간호조무	1			1		
사무보조(필기)	2		2			
사무보조(사서)	1	1				
조무(조무)	10	9	1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	1		1			
10급 소계	49	21	1	2	1	24
기계	1	1				
운전	18	2		1	1	14
전산						
간호조무						
조무(조무)	22	10	1	1		10
조무(지도)	6	6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	1	1				
사무보조(필기)조무(조무)	1	1				

□ 제안이유

-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과거사 및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건의 진실 등을 밝혀내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담당인력 보강 및 직급조정으로 하위직 사기진작 및 탄력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2조 관련 [별표]의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 총계 본청 정원을 “470”명에서 “474”명으로 4명 증원
 - 보육전담팀 설치 : 3명(행정·사회복지6급1, 사회복지8급1, 사회복지9급1)
 - 과거사 정리 담당인력 보강 : 1명(행정7급1)
 -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한 직급조정
 - 직속기관(보건소) : 간호조무10급△1 → 간호조무9급1
 - 동 사 무 소 : 행정9급△1 → 행정8급1

훈 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6년 2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 훈령 제 224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1】 , 【별표3】 , 【별표5】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06. 2. 17개정)

구본청 각실·과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급	현 행	
			정원	직급별 내역
합 계			<u>474</u>	
총무과	계		<u>39</u>	
	정무직	-	1	(구청장)1
	일반직	소계	<u>34</u>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8	행정7, 통신1
		7급	<u>9</u>	<u>행정8</u> ,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1
		8급	11	행정10, 통신기술·전자통신기술1
		9급	3	행정3
	별정직	소계	1	
		7급	1	일반비서1
	기능직	소계	3	
		8급	1	조무(조무)1
		9급	1	교환1
		10급	1	조무(조무)1
사회복지과	계		<u>32</u>	
	일반직	소계	<u>31</u>	
		4급	1	행정·임업1
		5급	1	행정1
		6급	<u>7</u>	행정4, 사회복지, <u>행정·사회복지2</u>
		7급	9	행정4, 사회복지5
		8급	<u>10</u>	행정1, <u>사회복지9</u>
		9급	<u>3</u>	행정2,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10급	1	사무보조(워드)·조무(조무)1

[별표3] (2006. 2. 17개정)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급	현 행	
			정원	직급별 내역
합 계			40	
보건소	계		40	
	일반직	소계	36	
		4급	1	보건·의무1
		5급	5	의무(계약)4, 행정·보건·간호1
		6급	5	보건·의료기술1, 의료기술·간호1, 행정·보건·간호1, 보건·약무·간호1, 보건·의료기술·간호1
		7급	7	보건1, 의료기술1, 간호4, 보건·약무1
		8급	10	행정1, 보건4, 의료기술2, 간호3
		9급	8	보건3, 의료기술4, 식품위생1
		소계	4	
	<u>기능직</u>	9급	2	운전1, <u>간호조무1</u>
		10급	2	운전1, 조무(조무)1

[별표5] (2006. 2. 17개정)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구 분	직 종	계급	현 행	
			정원	직급별 내역
합 계			198	
만수2동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전산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u>행정2</u>
		9급	3	<u>행정2</u> , 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2	
		7급	1	조무(조무)1
		10급	1	운전1

□ 개 정 사 유

-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지원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과거사 및 왜곡되거나 은폐된 사건의 진실 등을 밝혀내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담당인력을 보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직급조정으로 하위직 사기진작 및 탄력적인 정원관리를 하고자함

□ 주 요 내 용

- 제2조 관련 【별표1】 , 【별표3】 , 【별표5】 의 구분청, 직속기관(보건소), 동 정원을 별첨과 같이 개정한다.
 - 보육전담 기구(팀)설치에 따른 인력보강(사회복지과)
 - 과거사정리관련 업무 담당인력보강(총무과)
 - 직급조정[직속기관(보건소), 만수4동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15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06년 불법 주정차 단속 민간용역사업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6.12.31까지

다. 용역내용

(1) 대 상 : 버스전용차로 5개노선 21km 및 주·정차금지구역 189개구간 197km

(2) 범 위

○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대 위반차량 증거 채증 및 운영시간외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보조, 특정(중점)관리지역등에 대한 도보예방순찰, 불법 주·정차차량 경고(안내)장 부착 및 이동요구, 단속활동 보조 등

○ 필요시 주차안내 및 교통정리

○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3) 인력 및 장비

○ 용역원 : 8명

○ 차 종 : 경차 4대[노란색] - 단속차량 통일성 확보
기타 단속차량에 설치된 시설완비(경광등, 방송시설등)

○ 통신장비 : 무전기, 전화기(휴대폰) 1인1대 확보

○ 기 타 : 디지털카메라 또는 PDA 단속기기 4대

라. 설계금액 : 174,241,600원(추정가격140,219,636원 부가세14,021,964원 차량유지비20,000,000원)

※ 기초금액 : ₩154,241,600원[계약시 차량유지비 포함]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2.15(수) 13:00~2006. 2. 21(화) 13:00

바.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06. 2 21(화) 14: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설계서 열람기간 : 2006.2.10(금)~2006.2.21(화)[남동구교통과 ☎453-2892]

2.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

나. 지역제한 경쟁입찰 용역이며 적격심사대상 용역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2호:2005.12.30) 및 인천광역시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인천광역시예규 제419호:2001.1.8) -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 심사기준 적용】

3.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주차관리용역 사업자등록 법인업체로서 용역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보

유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W154,241,600)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나.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토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예정가격의 87.745%인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 최저가(제한적)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용역수행능력평가점수가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용역실적기간이 오래된 자로 결정합니다.

마. 입찰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아래의 적격심사서류와 입찰참가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력 및 장비확보 증빙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서류

인천광역시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인천광역시예규 제419호 : 2001.1.8)

제5조에 의한 재무상태 및 당해용역 이행실적(3년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무상태 평가 기준비율(자기자본비율 56.92%, 유동비율 163.06% 적용)

→ 한국은행발행 2005년 기업경영분석자료중 M75 사업지원서비스업 적용

7. 낙찰자 통보기한일 : 적격심사후 즉시 통보

8.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 유의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세부기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청(교통과)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가 만일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 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재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2.0%)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교통과)(계약담당 한경희☎453-2882, 용역담당 한윤섭☎453-2892)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6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주차장특별회계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159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자진폐차 및 자진회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고발(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6. 2. 13.~2006. 3. 4.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범칙처분) : 2006. 3. 4.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논현동 423-2 ☎032-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184 ☎032-442-6660)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726-7 ☎032-814-4400)
4. 대상차량 : 인천31무4737.뉴욕커(크라이슬러)외 12대 (내역별첨)
5. 문 의 처 :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32-453-2920~6)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연번	방치차량			소유주		보관장소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명	주소	
803	강원27두6830	엑셀	구월1동201번지 앞	정완교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거마리31-1호 거광하이츠@1108호	인천폐차사업소
809	서울45고8747	갤로퍼	서창동 삼화빌라 앞	장봉익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589-2호 3/2반 402호	서울폐차사업소
810	서울3스9912	프라이드	남동공단67BL-12LT 앞	최동아O.C.M상역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31-1호	서울폐차사업소
811	인천1로5914	세피아	구월4동1305-19호 우정빌라 앞	유주한	인천 남동구 구월4동1299번지 상기주택3층	서울폐차사업소
812	인천31로5236	소나타2	고잔동 서울폐차장 옆	김익수	인천 남동구 만수동1005 주공@805/1111호	서울폐차사업소
813	서울73라5969	갤로퍼	만수2동871번지 앞	손만길	서울 관악구 남현동1079-46호	기전폐차사업소
817	경기1드1640	세피아	간석3동775-11 펜더@밀	김경신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223-12호	기전폐차사업소
822	충남82고8825	와이드볼고	만수6동 만월중학교옆 도로	김성배	충남 천안시 성거읍 신월리2-26호 천안삼환나우빌107/602호	기전폐차사업소
824	번호미상	50cc 이륜차	구월1동1207-16호 부원주택 뒤		미 상	기전폐차사업소
825	경기37고4667	프린스	간석4동616-34호 앞	이철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246-78호	기전폐차사업소
827	서울31라3368	엘란트라	남동공단 기전폐차사업소 옆	최구지라트트레이딩	서울 중구 저동1가90-6호 명보빌딩405호	기전폐차사업소
828	강원2가1000	아카디아	구월4동1277번지 영란의원 앞	최태백산김치	강원 태백시 칠암동233-5호	인천폐차사업소
832	인천31무4737	뉴욕거 (크라이슬러)	간석1동467-5호 주차구획선 내	이승우	인천 서구 석남동470-9호 다세대2/201호	인천폐차사업소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강원 속초시청(교행)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강원 춘천시청(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경기 과천시청(산경)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경기 광명시청(교행)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구리시청(교행)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경기 김포시청(교통)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경기 부천시 교통지도사업소(교지)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 소사구청(지경)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환위)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청(지경)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청 교통지도사업소(교지)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경기 부천시청(교지)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청(교통)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경기 부천시청(민원,징수)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세무)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건설)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경기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교통)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사산)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기 수원시 팔달구청(사산)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시 팔달구청(세무,환위)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장(차등)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시흥시청(환경,세무)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산교)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경기 안산시청(교통)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송지)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경기 하남시청(세무)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경기광주경찰서(교통)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사흥경찰서(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경남 김해시청(교행)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 마산시청(교행)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 창원군청(지경,재무,민원)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창녕경찰서(교통)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지관1621-1676)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직관1621-1087)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2203)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1081)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2203)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2528)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지관1621-1232)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지관1621-1277)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징급1621-1321)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징급63310-10288)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자징1621-452)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자징1621-921)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서양천지사(가일52104-618)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로금천지사(가일52104-1347)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국민연금관리공단 북인천지사(가일52104-233)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원지사(가일52104-336)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징수6508-115115)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징수6508-24085)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징수6508-141105)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부산 해운대구청(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강남구청(교지)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서울 강동구청(교통)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서울 강서구청(주차)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관악구청(교지)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서울 관악구청(세이,교행)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광진구청(교지)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서울 구로구청(교행)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서울 금천구청(교행,산환,세이)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서울 금천구청(세관,교지)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노원구청(교지)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동대문구청(교관)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동작구 상도동279-379 세정빌라202 문영환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서울 동작구청(교지)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서울 동작구청(세일)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마포구청(교지)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서초구 방배동935-34 외환신용카드(주)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서울 서초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서초구청(교지,세이)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서울 서초구청(교행)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서울 서초구청(주차)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성동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성동구청(교행,세이)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서울 성북구청(교통)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송파구청(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서울 양천구청(교지)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서울 양천구청(세이,환위,교행)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서울 양천구청(환위,지교)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주)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주)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서울 영등포구청(교지)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서울 용산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종로구 연지동136-74 서울보증보험(주)
838	인천31무7531	티코	이춘희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서울 종로구청(교지)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서울 중구청(교지)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서울 중랑구청(교지)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서울남부경찰서(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방배경찰서(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성동경찰서(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수서경찰서(교통)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서울양천경찰서(교통)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서울특별시청(교단)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인천 계양구청(교행)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 계양구청(교행, 환위)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인천 계양구청(교행, 환위, 세무)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계양구청(세무)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계양구청(세무, 교행)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남구청(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인천 남구청(교통)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인천 남구청(교통, 차량, 환위)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남구청(지교, 위생)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인천 남구청(차량, 세무, 교통)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인천 남구청(환보, 차량, 세무, 교통)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인천 남동구 만수동980 한성종합관리(주)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남동구청(교통)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838	인천31무7531	티코	이춘희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인천 남동구청(세무)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남동구청(세무, 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인천 남동구청(세무, 환위)
04-348	인천82라5966	점보타이탄	박삼선	
808	인천70다9118	그레이스	김효진	인천 남동구청(세무, 환위, 교통, 차량)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인천 남동구청(징수, 교통)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인천 남동구청(징수, 교통, 차량)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인천 남동구청(환위, 세무, 교통)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인천 남동구청(환위, 차량, 세무, 총무, 교통)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동구청(건교)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인천 동구청(건교, 세무, 차량)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동구청(지교)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인천 부평구청(교행)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인천 부평구청(교행, 차량)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 부평구청(교행, 환위, 시세)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인천 부평구청(세무)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인천 부평구청(세무, 교통)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부평구청(지교)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인천 부평구청(환보, 지교)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인천 서구청(교통)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서구청(교통, 세무, 환위)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 서구청(교통, 환위)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인천 서구청(교행)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인천 서구청(세무, 교통)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서구청(지교)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인천 연수경찰서(교통)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연수구청(세무)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연수구청(지교)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인천 연수구청(지교,세무)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인천 연수구청(차량)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중구청(교녹)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인천 중구청(교통)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중구청(지교)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계양경찰서(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광역시청(교기)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인천광역시청(교지)
809	인천70다9119	그레이스	김효진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인천광역시청(주관)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인천남동경찰서(교통)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인천동부경찰서(교통)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인천부평경찰서(교통)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인천서부경찰서(교통)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세무서(징세)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인천시시설관리공단(교통)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전북 군산시청(교행)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도교)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전북부안경찰서(교통)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충남 홍성군청(지경)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161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미래광장외 1개소 조경시설 관리공사
 - 공사위치 : 남동구 구월동 시청앞, 운연동 40-2번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7일간
 - 공사개요
 - 관리면적 : 11,755㎡(미래공장 9,385㎡, 운연동쉼터 2,370㎡)
 - 전 정 : 느티나무외 11종 224주
 - 제 초 : 6,248㎡
 - 기타관리 : 시비, 방제, 수간보호등
 - 설계금액 : ₩89,700,000원(추정가액 81,545,450원 부가가치세 8,154,55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2월 14일(화) 09:00~ 2월 23일(목요일)11: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2월 23일(목요일) 12: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89,700,00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178.34% 유동비율 152.19%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정비과 녹지조경팀(032-453-2866)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2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164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공사(구월간석권역)
 - 공사위치 : 남동구 구월1~3동, 간석1~4동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6. 12. 22일까지
 - 공사개요 : 가로수관리외 8개공종
 - 가 로 수 : 14개노선 7,672주
 - 수 벽 : 20개소 17,506m
 - 녹 지 : 15개소 2,964㎡
 - 교 통 섬 : 4개소 3,389㎡
 - 초 화 : 9개소 42,774본
 - 기타관리 : 쉼터 6개소 1,597㎡, 긴급민원처리 4인/220일 등
 - 설계금액 : ₩179,960,000원(추정가액 163,600,000원 부가가치세 16,360,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2월 14일(화) 09:00~ 2월 23일(목요일)14: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2월 23일(목요일) 15: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

격 등록 업체로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179,960,0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6.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178.34% 유동비율 152.19%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정비과 녹지조경팀(032-453-286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2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165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녹지 및 가로수 권역별 관리공사(만수권역)
 - 공사위치 : 남동구 만수1~6동, 구월4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 논현고잔동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6. 12. 22일까지
 - 공사개요 : 가로수관리외 8개공종
 - 가 로 수 : 42개노선 9,961주
 - 수 벽 : 19개소 15,574m
 - 녹 지 : 26개소 41,223㎡
 - 교 통 섬 : 4개소 2,052㎡
 - 초 화 : 6개소 19,760본
 - 기타관리 : 쉼터 3개소 456㎡, 수목굴취 11,089주 등
 - 설계금액 : ₩229,900,000원(추정가액 209,000,000원 부가가치세 20,900,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2월 14일(화) 09:00~ 2월 23일(목요일)13: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2월 23일(목요일) 14: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

격 등록 업체로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229,900,00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6.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178.34% 유동비율 152.19%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도시정비과 녹지조경팀(032-453-286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2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166호

시설공사 입찰공고(단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06년도 가로등 보수공사(연간단가)
 - 공사위치 : 남동구 관내(부평고개길외 15노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06. 12. 31까지
 - 공사개요 : 가로등 단가항목 총 109종
 - 설계금액 : ₩270,000,000원(추정가액 245,454,540원 부가가치세 24,545,46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2월 14일(화) 09:00~ 2월 23일(목요일)12: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2월 23일(목요일) 13: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단가)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전기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은 단가 총액인 (₩24,762,800)의 $\pm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167.27% 유동비율 130.06%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건설과 토목팀(032-453-274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2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167호

시설공사 입찰공고(단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2006년도 가로등 정비사업(연간단가)
 - 공사위치 : 남동구 관내(무네미길외 14개노선)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공사개요 : 가로등 단가항목 총 109종
 - 설계금액 : ₩193,606,000원(추정가액 176,005,450원 부가가치세 17,600,55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2월 14일(화) 09:00~ 2월 23일(목요일)15: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2월 23일(목요일) 16: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단가)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전기공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업체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은 단가 총액인 (₩24,762,80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3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부채비율 167.27% 유동비율 130.06%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건설과 토목팀(032-453-2747)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2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168호

용역 입찰공고(단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06년도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수거,운반,처리용역(연간단가)
- 용역위치 : 남동구 관내 전지역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2006. 12. 31까지
- 용역개요 : 쓰레기 추정 약 590톤
- 설계금액 : ₩156,000,000원(추정가액 141,818,180원 부가가치세 14,181,82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06년 2월 14일(화) 09:00~ 2월 23일(목요일)16: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6년 2월 23일(목요일) 17:00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단가)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지역제한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내에 주된 사업소를 갖추고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
- 폐기물관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전문) 허가업체

4.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은 단가 총액인 (₩264,340)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 복수에 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다 빈도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87.745%)적 최저가로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84호, 2005. 12. 30)에 의거 수행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입찰점수를 합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공사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자기자본비율 52.29% 유동비율 154.76%

8.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5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경영재정과 경리팀(032-453-2262) 또는 청소과 청소행정팀(032-453-2553)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천광역시남동구 인터넷 홈페이지(<http://namdong.incheon.kr>)의 입찰공고란에 게재하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06년 02월 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169호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자진처리를 명령하오니 차량소유자는 공고기간 이내에 자진폐차 및 자진회수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간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차량은 강제처리(폐차·말소)됨은 물론 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85조에 의거 범칙금부과(100~150만원) 또는 동법 제88조에 의거 형사고발(1년이하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됨을 알려드립니다.

2006년 2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6. 2. 14. ~ 2006. 3. 5.
2. 강제처리(강제폐차·말소 및 범칙처분) : 2006. 3. 5.이후
3. 폐차예정장소
 - 인천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논현동 423-2 ☎032-814-7077)
 - (주)서울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184 ☎032-442-6660)
 - 기전산업(주)폐차사업소 (인천.남동구 고잔동 726-7 ☎032-814-4400)
4. 대상차량 : 인천3라2187(엑셀)외 7대 (내역별첨)
5. 문 의 처 :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관리팀(☎ 032-453-2920~6)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공시·송달 공고조서

연번	방치차량			소유주		보관장소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명	주소	
01-540	인천3라2187	엑셀	구월4동1303-8호 앞	오영웅	인천 남동구 구월동1303-30호 리더빌리3/302호	기전폐차사업소
153	인천2고4017	캐피탈	간석4동 풍림@ 현장	최봉환	인천 연수구 옥련동345-7호 옥련빌리3/B01호	기전폐차사업소
656	인천7노5407	그레이스	간석1동 백조예식장 뒤 비탈길	배현선	인천 부평구 심정동409-24호	기전폐차사업소
02-100	인천30러1165	코란도	만수1동977번지 앞	주종묵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945-16호	기전폐차사업소
491	인천북가8604	이륜차	만수6동 시영@관리사무소 앞		소유주미상(조희불등)	기전폐차사업소
681	인천31고8823	엑셀	만수4동51-5호 앞	이상현	인천 남동구 만수동844-128호 시원주택304호	기전폐차사업소
1067	인천80마7705	포터	만수3동 동부초교 남문 옆	박광석	인천 남동구 만수3동111-349호 천우맨션C/201호	기전폐차사업소
03-21	충남5루1736	다마스	남동공단2BL-3T 앞	이형승	충남 태안군 태안을 남문리721-14호	기전폐차사업소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강원 속초시청(교행)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강원 춘천시청(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경기 과천시청(산경)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경기 광명시청(교행)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구리시청(교행)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경기 김포시청(교통)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경기 부천시 교통지도사업소(교지)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 소사구청(지경)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경기 부천시 오정구청(환위)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경기 부천시 원미구청(지경)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청 교통지도사업소(교지)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경기 부천시청(교지)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부천시청(교통)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경기 부천시청(민원,징수)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경기 성남시 수정구청(세무)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건설)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경기 성남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교통)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사산)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기 수원시 팔달구청(사산)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시 팔달구청(세무,환위)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경기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장(차등)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시흥시차량등록사업소(차량)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 시흥시청(환경,세무)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산교)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경기 안산시청(교통)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송지)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경기 하남시청(세무)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경기광주경찰서(교통)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경기시흥경찰서(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경남 김해시청(교행)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 마산시청(교행)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 창원군청(지경,재무,민원)
815	경남43가2330	티코	김성수	경남창녕경찰서(교통)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지관1621-1676)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직관1621-1087)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2203)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1081)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2203)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자징1621-2528)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지관1621-1232)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지관1621-1277)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징급1621-1321)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징급63310-10288)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자징1621-452)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자징1621-921)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국민연금관리공단 강서양천지사(가이52104-618)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로금천지사(가일52104-1347)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국민연금관리공단 북인천지사(가이52104-233)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국민연금관리공단 수원지사(가일52104-336)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징수6508-115115)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징수6508-24085)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징수6508-141105)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부산 해운대구청(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강남구청(교지)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서울 강동구청(교통)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서울 강서구청(주차)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관악구청(교지)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서울 관악구청(세이,교행)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광진구청(교지)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서울 구로구청(교행)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	서울 금천구청(교행,산환,세이)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서울 금천구청(세관,교지)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노원구청(교지)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동대문구청(교관)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동작구 상도동279-379 세정빌라202 문영환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서울 동작구청(교지)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동작구청(세일)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마포구청(교지)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서초구 방배동935-34 외환신용카드㈜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서울 서초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서초구청(교지,세이)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서울 서초구청(교행)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서울 서초구청(주차)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성동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성동구청(교행,세이)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서울 성북구청(교통)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서울 송파구청(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서울 양천구청(교지)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서울 양천구청(세이,환위,교행)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서울 양천구청(환위,지교)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1 현대캐피탈(주)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서울 영등포구청(교지)
803	경기75가1672	베스타	정순옥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813	경기4오2048	엘란트라	정희재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서울 용산구청(교지)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서울 종로구 연지동136-74 서울보증보험(주)
838	인천31무7531	티코	이춘희	서울 종로구청(교지)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서울 중구청(교지)
816	서울2루4856	르망	이기호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 중랑구청(교지)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서울남부경찰서(교통)
817	서울81모8831	봉고프런티어	신일금형산업(주)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방배경찰서(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성동경찰서(교통)
834	서울51너1650	프린스	임영문	서울수서경찰서(교통)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서울양천경찰서(교통)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서울특별시청(교단)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인천 계양구청(교행)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인천 계양구청(교행, 환위)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인천 계양구청(교행, 환위, 세무)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계양구청(세무)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계양구청(세무, 교행)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남구청(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인천 남구청(교통)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인천 남구청(교통, 차량, 환위)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남구청(지교, 위생)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인천 남구청(차량, 세무, 교통)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인천 남구청(환보, 차량, 세무, 교통)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인천 남동경찰서(교통)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인천 남동구 만수동980 한성종합관리(주)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남동구청(교통)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806	인천70거3802	타운너	조신영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22	서울50너1865	쏘나타	서귀석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인천 남동구청(교통, 세무)
838	인천31무7531	티코	이춘희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인천 남동구청(세무)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남동구청(세무, 교통)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인천 남동구청(세무, 환위)
04-348	인천82라5966	점보타이탄	박삼선	
808	인천70다9118	그레이스	김효진	인천 남동구청(세무, 환위, 교통, 차량)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인천 남동구청(징수, 교통)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인천 남동구청(징수, 교통, 차량)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인천 남동구청(환위, 세무, 교통)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인천 남동구청(환위, 차량, 세무, 총무, 교통)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동구청(건교)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인천 동구청(건교, 세무, 차량)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동구청(지교)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인천 부평구청(교행)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831	경기83거7200	베스타밴	김학근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839	인천3러9072	르망	최광규	인천 부평구청(교행, 차량)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 부평구청(교행, 환위, 시세)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인천 부평구청(세무)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인천 부평구청(세무, 교통)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원호	인천 부평구청(지교)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인천 부평구청(환보, 지교)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인천 서구청(교통)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서구청(교통, 세무, 환위)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인천 서구청(교통, 환위)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인천 서구청(교행)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인천 서구청(세무, 교통)
03-1133	인천4가7038	엑셀	이항규	인천 서구청(지교)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인천 연수경찰서(교통)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연수구청(세무)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 연수구청(지교)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이해관계인 명부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유주	이해관계인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인천 연수구청(지교,세무)
821	인천80마6999	포터슈퍼캡	김덕수	인천 연수구청(차량)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인천 중구청(교복)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인천 중구청(교통)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 중구청(지교)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계양경찰서(교통)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832	인천7노1597	포터	나석구	
03-760	인천34다5725	그랜저	김완호	인천광역시청(교기)
830	인천5더1931	그레이스	이상근	인천광역시청(교지)
805	인천7노2913	와이드봉고	김시철	
809	인천70다9119	그레이스	김효진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825	인천35가7432	아벨라	조성철	
813	경기4으2048	엘란트라	정희재	인천광역시청(주관)
840	서울85다5126	와이드봉고	엄상철	인천남동경찰서(교통)
809	인천80마6760	그레이스밴	조창수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847	인천31더3802	엑센트	동양석재(주)	인천동부경찰서(교통)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826	인천31로7951	세피아	임영원	
824	인천33러1862	캐피탈	박상순	인천부평경찰서(교통)
835	인천34머8347	베르나	조용갑	
841	인천7도4179	그레이스	우영덕	
04-245	인천35가2834	그랜저	김광태	인천서부경찰서(교통)
802	인천4거2548	시에로	허은하	인천세무서(징세)
804	경기33가5515	그랜저	현문조	
814	인천30루1091	레간자	우상희	
819	인천80마7661	베스타밴	배성렬	전북 군산시청(교행)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전북 전주시 완산구청(도교)
836	인천32마1087	쏘나타2	허진석	전북부안경찰서(교통)
850	경기3보1010	그랜저	(주)삼원기공	충남 홍성군청(지경)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170호

운행차 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과태료부과)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가능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제출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6. 2. 15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공고기간 : 2006. 2. 15 ~ 2006. 2. 28
2. 의견제출기간 : 2006. 3. 13일까지.
3. 송달내역 : 김봉곤(인천31고6166) 등 56건(별첨 명단 참조)
4. 기타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 032-453-2615) 끝.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부과사전통지 공시송달 세부내역(2005.12.21~2006.1.20)

순번	등록번호	유효기간만료일	소유자명	주소(소유자)	과태료(원)
1	인천31고16166	20050925	김봉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94번지 8호 1316191 19동 4번	80000
2	86무4468	20050731	박영봉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324번지 21호 지3호 3동 4번	300000
3	인천30하5512	20050820	(주)가렌트카	경기도 수원시팔달구 인계동 952번지	300000
4	인천2모1089	20050822	(주)신한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6번지 43호	300000
5	인천72기6605	20050803	한동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46번지 1층 10동 3번	300000
6	인천30기7399	20050731	양영석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06번지 1호 2동 8번	300000
7	인천33다1288	20050731	구영훈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33번지 50호 19동 2번	300000
8	인천80거12855	20050811	김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동 566번지 12호 202호 1동 2번	300000
9	인천81다1033	20051025	이영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35번지 21호 월성디세다주택 C동 202호 4동 5번	20000
10	인천32나8595	20050810	전영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3번지 주공아파트 164동 205호 11동 2번	300000
11	인천31무7594	20050804	윤석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8번지 20호 대경빌라트 703동 401호 37동 3번	300000
12	25가3797	20051001	김동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37번지 3호 303호 12동 3번	20000
13	인천31고6970	20050810	이해창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494번지 2호 36동 4번 301호	300000
14	인천31마8722	20050818	민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85번지 12호 신화주택 103호 23동 2번	300000
15	인천70나7687	20050911	(주)파닉스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9번지 13호 (남동공단 142블럭14롯데)	100000
16	인천81기6981	20051019	(주)푸드바이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94번지우경빌딩 3층	20000
17	인천31다1138	20050731	(주)월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74번지 25호	300000
18	77두2554	20050823	최정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0번지 38호 대영빌라 기동 303호 7동 2번	300000
19	인천70가5389	20050724	박동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00번지 36호 7동 1번	300000
20	인천30루1875	20050813	송복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1번지 12호 1동 1번	300000
21	28바1231	20050810	VARB080EV UYQJN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7번지 1호	300000
22	인천30루1592	20050813	정진설비(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14번지 8호	300000
23	인천70마1884	20050809	김선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89번지 6호 롯데화탈빌 3동 402호 13동 1번	300000
24	인천3기1522	20050816	상진산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현동 109번지 147호	300000
25	인천31노8080	20050807	MONOJ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19번지 3호	300000
26	26구5294	20050813	(주)강림금속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8번지 7호 남동공단 388-8L	300000
27	인천73나1173	20050818	김성철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04번지 15호 성신빌라 2동 802호 12동 5번	300000
28	인천3기3925	20050824	(주)화승종합기계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3번지 1호	300000
29	인천32다3448	20050804	한광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5번지 13호 명성맨션 501호 19동 4번	300000
30	인천70라2010	20050808	(주)아담건설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49번지 3호 한빛프라자4동	300000

순번	등록번호	유효기간만료일	소유자명	주소(소유자)	과태료(원)
31	인천30무3097	20050804	이해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8번지 9호 한일연립주택 5동 101호 21통 5반	300000
32	28타3594	20050728	GUBAREV ALEXANDER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07번지 1호 남동공단3-2	300000
33	인천32가1809	20050724	함준욱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04번지 13호 모래내그린빌라 3동 103호 12통 4반	300000
34	인천2모7072	20050728	남승공영(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490번지 1호	300000
35	인천80가9978	20050724	(주)대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3번지 6호 남동공단 187-10	300000
36	인천5라2104	20051012	홍승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13번지 3호 대하파크빌라 5동 302호 21통 5반	50000
37	인천2모8167	20050802	화인토건(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40번지 8호	300000
38	인천3가3448	20050823	제일농수산(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78번지 3호	300000
39	02나3280	20040815	(유한)대승부동산정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974번지 7호 명진탑스빌 A-201	300000
40	인천30너7933	20050805	이은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7번지 4호 광성홈타운 1동 101호 7통 6반	300000
41	인천32라7414	20050725	차은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9번지 29호 은영빌라 3동 801호 20통 3반	300000
42	인천3가4833	20050828	김형선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1번지 78호 3통 5반	170000
43	인천70다18679	20050823	(주)이삭자동차문전전문학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원동 68번지 21호	300000
44	인천32가7444	20051017	현의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528번지 6호 23통 4반	20000
45	인천80가2017	20050802	김기우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24번지 주공아파트 228동 305호 15통 5반	300000
46	인천4가5339	20050807	(주)범진전기엔지니어링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6번지	300000
47	인천80가3397	20051016	채기성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092번지 4호 세티텔 202호 4통 1반	20000
48	인천30두9514	20050807	(주)아람산업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14번지 4호	300000
49	인천3노2455	20050724	(주)구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번지 368호	300000
50	인천70다19900	20050817	(주)듀코테크놀로지스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81번지 3호 남동공단 81B-4L	300000
51	인천7모4762	20050901	유한테크산업(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29번지 8호 159블럭 6롯데	100000
52	인천30두9955	20050810	동양특송(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9번지 4호 종합건물 302 1/2	300000
53	인천31두4205	20050728	채널주택개발(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9번지 3호	300000
54	인천31두5838	20050831	최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84-1,2번지 금성맨션 302호 31통 6반	160000
55	인천30가3443	20050804	(주)대동멜라민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6번지 7호 남동공단 110블럭8롯데	300000
56	73노1756	20050731	손기명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0번지 251호 서율연립 102호 17통 4반	30000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6 - 177호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2월 1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등관리법(2004.12.23. 공포, 2005. 6.24. 시행)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2005. 6.23)되어 법 개정취지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안 제2조)
- 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안 제4조)
- 다.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및 표시제한 등(안 제5조 및 제6조)
- 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안 제8조 내지 제18조)
- 마.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안 제20조)
- 바. 안전도검사 대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 22조 내지 제27조)
- 사. 수수료,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규정(안 제34조 내지 제3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3월 8일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도시정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 제출하거나 전화(☎032-453-28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길 88(만수6동 1008번지)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 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적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의 옥상간판(높이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 안전확인 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 간판
2. 영 제4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낙석방지시설물
6. 전주·가로등·가림막(상업용 광고물로서 전단, 현수막, 벽보 등에 한한다)
7. 교각·방음벽·석축·옹벽 및 계단
8. 도로(인도를 포함한다)의 노면
9. 그밖에 도로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의 총수량
2. 광고물 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지면·벽면·공중 또는 물건 등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영 제19조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면(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으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주이용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당해 건물의 높이가 5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건물높이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 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4.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서는 네온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 위치한 당해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시설물 등의 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

별론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 23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 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휴지통·벤치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동화상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3.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전광류의 경우 가로 200센티미터 이내, 세로 30센티미터 이내, 총 표시면적 0.4제곱미터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개별 업소의 출입구에는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 제4호의 규정

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 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 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와 세로크기의 2분의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리고,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 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

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 폭(창문부분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은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현수막의 게시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고가 취소된 현수막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현수막의 검인은 3회 이내로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 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이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구청장이 설치·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옥외광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2. 벽보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및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은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의 부착신청이 없는 경우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규격은 가로 255센티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고, 벽보 1매의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

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하며, 살포하거나 차량 등에 투입 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 제2호의2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 제6호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 입법예고, 기타 일반 공익광고는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시정홍보 내용은 광역시장, 구정·군정 홍보내용은 구청장·군수가 각각 정하여 표출 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고물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 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인천광
역시남동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들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위원들은 다음 각호
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
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
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위원회 관련 담당이
된다.

⑤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남동구광고물관리심
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미
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이상인 옥상간판(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을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2. 그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하의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표시하는 지주이용간판
4. 그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검사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구청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구청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허가된 사항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구청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게시시설을 위탁받은 자가 게시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게시 의뢰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고정광고를 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구의 게시판 또는 구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 등의 종류·수량
2. 광고물 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할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수강절차·비용
4. 그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2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한 경우에는 교육의 실시시기·장소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별도로 지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 금액 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허가·신고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광고물 등
2. 허가 또는 신고의 처리 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에 한한다)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물 등

④영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구역내의 새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 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부과징수 규칙의 예”에 의한다.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영 제4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등) ①구청장은 도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이 특별정비사업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특별정비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등

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구청장은 용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타 보조 또는 용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정비·수거된 현수막에 대한 보상) 영 제30조의2 및 이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현수막 이외의 현수막을 정비·수거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인 현수막은 5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상인 현수막은 1,000원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우수광고상) ①구청장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 또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시상시기, 선정방법·절차 및 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필요시에는 시와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제32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7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 신규로 옥외 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 옥외광고업 신고 전에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4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4시간	○ 관계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종사자의 자세 - 1시간	○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 실시	○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 도 정 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 영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옥외광고업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옥외광고물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규교육 중 표시에 관한 사항 3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2】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제36조제1항 관련)

가. 일반 옥외광고물

(단위 : 원)

광고물의 종류	구분	단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가로형간판 가. 일반가로형간판 (나향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1,500	
2. 세로형간판	개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500	
3. 돌출간판	개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 기관·약국 표지등	20,000 1,000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간판 나. 지주이용간판	개	개	· 가로형간판 가향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	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비 고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공공시설물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나. 전주·가로등주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5,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 1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대		400,000	
다. 비행기·선박 양측면	대		10,000	
나. 차량 양측면	대		2,000	
11. 선전탑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5,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6,000 1,500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10,000 2,000	
15. 벽 보	매	· 50매당	5,000	
16. 전 단	매	· 1,000매당	5,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나.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

(단위 : 원)

구분 광고물의 종류	단위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시내·시외·전세 버스 외부광고	대		2,000	
2. 영업용 화물자동차 외부광고	대		1,500	
3. 영업용 택시광고	대		1,000	
4. 차량탑재영상광고	대		350,000	
5.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6. 축구조형물광고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 홍보탑광고	개		20,000	
8. 벽면이용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9. 깃발이용광고	개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5,000 2,000	

※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수수료의 징수방법

- (1) 수수료 산정은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지주면적을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입체형, 입체형문자·도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2배를 적용하며,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외곽선에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등 비율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외곽선을 기준으로 함.
- (4)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며, 광고물등의 규격·위치·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 (5)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3】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 (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 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 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 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이상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800
7.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26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단순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한다.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제36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비 고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항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항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영 제41조제3항)

- (1) 관할 구역 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
- (2) 업소 명을 변경한 때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37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비 고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8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13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19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39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4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80만원 +10만원	
(2) 그밖의 지역·장소에 설치 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5만원	
- 0.6~0.8제곱미터 이하		7만원	
- 0.9~1.0제곱미터 미만		9만원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15만원	
- 1.4~1.6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1.7~2.0제곱미터 미만		29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2.4~2.6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2.7~3.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 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5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비고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 지주·지정계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 만원을 가산한 금액 •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위 반 사 항	과 태 료	부과금액	비고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2만원 15만원 18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25만원 35만원 4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 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10만원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 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0천 원 장당15천 원 장당25천 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5천 원 장당20천 원 장당30천 원	
라. 전단	·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5천 원 장당10천 원 장당15천 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이하 - 11~20장이하 - 21장이상		장당15천 원 장당20천 원 장당30천 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5만원	
나. 연 2회 위반자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5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38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비고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2.1~3.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3.1~4.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85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12.1~14.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14.1~16.0제곱미터 이하		145만원	
- 16.1~18.0제곱미터 이하		165만원	
- 18.1~20.0제곱미터 미만		185만원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200만원 +10만원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20만원	
- 2.1~3.0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3.1~4.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4.1~5.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75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85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비고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12.1~14.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14.1~16.0제곱미터 이하		150만원	
- 16.1~18.0제곱미터 이하		170만원	
- 18.1~20.0제곱미터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200만원 +10만원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 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30만원	
- 0.6~1.0제곱미터 이하		35만원	
- 1.1~2.0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2.1~3.0제곱미터 미만		48만원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3.0~3.5제곱미터 이하		55만원	
- 3.6~4.0제곱미터 이하		65만원	
- 4.1~4.5제곱미터 이하		80만원	
- 4.6~5.0제곱미터 미만		95만원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110만원	
- 6.1~7.0제곱미터 이하		130만원	
- 7.1~8.0제곱미터 이하		150만원	
- 8.1~9.0제곱미터 이하		170만원	
- 9.1~10.0제곱미터 미만		190만원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 을 가산한 금액	200만원 +10만원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 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비고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이하 - 3.1~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7.0제곱미터 이하 - 7.1~8.0제곱미터 이하 - 8.1~9.0제곱미터 이하 - 9.1~10.0제곱미터 미만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0~12.0제곱미터 이하 - 12.1~14.0제곱미터 이하 - 14.1~16.0제곱미터 이하 - 16.1~18.0제곱미터 이하 - 18.1~20.0제곱미터 미만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0~25.0제곱미터 이하 - 21.1~30.0제곱미터 이하 - 30.1~35.0제곱미터 이하 - 35.1~40.0제곱미터 이하 - 40.1~45.0제곱미터 이하 - 45.1~50.0제곱미터 미만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300만원 +10만원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비고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2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70만원+ 1㎡당5만원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애드벌룬(공) 1개		40만원	
- 애드벌룬(공) 2개		60만원	
- 애드벌룬(공) 3개이상		8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 일기예보탑	·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40만원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60만원	
- 연면적 16~20제곱미터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80만원+ 1㎡당5만원	
나. 교통안내소	· 가로형간판에 준함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 버스승강장·택시승강 장·관광안내도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라.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 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한 편익시설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마. 가목 내지 라목외의 공 공시설물	·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위 반 사 항	이 행 강 제 금	부과금액	비고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1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50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50만원+ 1㎡당10만원	
(1) 유인 비행선	·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00만원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200만원+ 1㎡당10만원	
나. 그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10만원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20만원 29만원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5만원	
- 3.0~4.0제곱미터 이하 - 4.1~5.0제곱미터 미만		45만원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50만원 +5만원	
9. 그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 (3) 입체형·모형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업소명 (단체명)			
	④ 주 소			
⑤ 영업장 소재지				
⑥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서식】

- 규 격 : 가로 6cm × 세로 8cm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인천광역시남동구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별지 제9호서식】

광고물등 청구 및 인수증				
청 구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 수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광고물등 종류			⑤수 량	
⑥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 보존용지(2종) 70g/m²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	
① 교육 과정명			
② 교육수료일자			
수 강 자	③ 성 명		
	④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 탁 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업 소 명 (단체명)			
	④주 소			
⑤영업장 소재지				
⑥위 탁 기 간		20 . . . ~ 20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3조 및 인천광역시남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m²

고 시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 - 06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지적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02 월 17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m)	Y(m)		경도(L)	위도(B)
	별		첨		
기 준 원 점 명	가리원점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관내				
측 량 연 월 일	별 첨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비 고	재설치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기준점 명칭	기준점 번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평면직각중형선수치(가리)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1	도근점	1971			3603.91	-8330.75	2006.02.15	철재	장수동 18-2	재설치
2	도근점	1972			3,494.98	-8318.17	2006.02.15	철재	장수동산57-2	재설치
3	도근점	1973			3394.5	-8313.41	2006.02.15	철재	장수동 41-5	재설치
4	도근점	1974			3276.84	-8330.02	2006.02.15	철재	장수동 133-4	재설치
5	도근점	1975			3209.97	-8359.12	2006.02.15	철재	장수동 136	재설치
6	도근점	1976			3149.53	-8395.18	2006.02.15	철재	장수동 153	재설치
7	도근점	1977			3036.93	-8470.35	2006.02.15	철재	장수동 153-2	재설치
8	도근점	1978			2917.96	-8549.44	2006.02.15	철재	장수동 163	재설치
9	도근점	1979			2847.14	-8597.34	2006.02.15	철재	장수동 176-1	재설치
10	도근점	1980			2775.59	-8649.07	2006.02.15	철재	장수동 170-4	재설치
11	도근점	1981			2651.97	-8726.73	2006.02.15	철재	장수동 170-4	재설치
12	도근점	1982			2568.45	-8783.32	2006.02.15	철재	운연동 산64-11	재설치
13	도근점	1983			2490.76	-8834.48	2006.02.15	철재	운연동 1	재설치
14	도근점	1984			2371.8	-8919.63	2006.02.15	철재	운연동 2	재설치
15	도근점	1985			2292.51	-8947.75	2006.02.15	철재	운연동산64-14	재설치
16	도근점	1986			2216.85	-8972.79	2006.02.15	철재	운연동산64-13	재설치
17	도근점	1987			2102.41	-9023.69	2006.02.15	철재	운연동6-4	재설치
18	도근점	1988			2042.07	-9069.24	2006.02.15	철재	운연동산64	재설치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06 - 7호

공공하수도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고시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현동 109-2번지 일원의 침수예방을 위하여 공공하수도 매설공사에 대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허가하고 동법제 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2월 1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1) 명 칭 : 대한주택공사인천지역본부장
 - 2)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07-8번지
2. 사업시행목적 : 논현동 109-105번지일원 침수예방
3. 사업시행지 위치 및 면적
 - 1) 위 치 : 논현동 109-2, 109-105, 111-14, 111-375
 - 2) 면 적 : 1,910㎡
4. 설치하고자하는 시설의 종류·규격 및 재질
 - 1) 시설의 종류 : 우수관
 - 2) 시설의 규격 : D=600mm ~ 800mm, L=340m
 - 3) 시설의 재질 : 흙관
5. 예정배수구역 : 승기배수구역(만수하수종말처리장)
6. 사업시행기간 : 2006. 02. 15 ~ 2006. 4. 15
7. 사용토지의 지번·지목 및 소유자
 - 1) 논현동 109-2(도) : 인천광역시
 - 2) 논현동 109-105(도) : 남동구
 - 3) 논현동 111-14(도) : 국(건설교통부)
 - 4) 논현동 111-375(도) : 국(건설교통부)